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 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마포구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기금출납원을 변경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명 변경

종전의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라는 법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나. 근거법 조항 변경 (안 제1조)

종전의 설치근거였던 법 조항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4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로 변경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변경 (안 제5조제2항제3항)

종전의 “사회복지위원회”로 되어 있었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

라. 기금출납원 변경 (안 제12조제2항)

종전의 기금출납원으로 지정되었던 “생활보장팀장”을 “자활고용지원팀장”으로 변경

마. 법명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

3. 개정근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9. 5. 15 ~ 2009. 6. 3)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2009. 6. 4)

다.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
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서울특별시마포
구(이하 “구” 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음에 제2호의2와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을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의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자활을 위한 사업 자금 용자

2의3.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4조제3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3호 및 제5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4항제3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신용보증) 제3조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생활보장팀장”을 “자활고용지원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u> <u>설치및운용조례</u>	<u>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u> <u>설치 및 운용 조례</u>
<p><u>제1조(목적)</u>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기금의 조성)</u>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서울특별시마포구</u>(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6. (생략) <p><u>제3조(기금의 용도)</u>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u>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기금의 조성)</u>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서울특별시 마포구</u>(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6. (현행과 같음) <p><u>제3조(기금의 용도)</u>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의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p> <p>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p> <p>가.~나. (생략)</p> <p>5. (생략)</p> <p>6. 기타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p>	<p><u>자활공동체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u></p> <p><u>2의3.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u></p> <p>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p> <p>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p> <p>가.~나.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6.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p>
<p>제4조(기금의 관리·운용)</p> <p>①~② (생략)</p> <p>③ (생략)</p> <p>1. (생략)</p> <p>2.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등</p>	<p>제4조(기금의 관리·운용)</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등</p>
<p>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p>	<p>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p>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4. (생략)

②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로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등을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등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

<p>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p> <p>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p> <p>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p>	<p>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p> <p>5. 제3조제6호에 따른 사업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p> <p>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p> <p>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p> <p>②~③ (생략)</p> <p>④ (생략)</p> <p>1.~2. (생략)</p> <p>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p>	<p>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p> <p>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p>

<p>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한 때</p> <p>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p> <p>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10조(신용보증)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p> <p>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p> <p>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p> <p>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10조(신용보증) 제3조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p> <p>제11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

<p>제12조(기금관리공무원)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u></p> <p>③ (생략)</p> <p>④ <u>지방재정법</u>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고용지원팀장으로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지방재정법</u>」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p> <p>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p> <p>1.~2. (생략)</p> <p>3. <u>기타</u> 구청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구청장은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p> <p>1.~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구청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구청장은 <u>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p> <p>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외의 기금</u></p>	<p>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 이외의 기금의 관</u></p>

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
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